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5. 8.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81호로 2025년 8월 14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자활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고, 자활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5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을 반영 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문 내용을 개정하여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및 자활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규모와 지원기간을 확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안 제8조)

나.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개정(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 8. 14.~2025. 8. 2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 배경 및 취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서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은 저소득계층이 단순한 현금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영등포구 역시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자금 대여한도와 상환기간은 2004년 조례 제정 당시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전세점포 임대지원 규정 또한 2013년 해당 조문이 신설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약 10~20년간의 물가상승과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현재 영등포구에서 지원 중인 자활지원사업은 전세 점포 임대 지원뿐임.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1)2025년 자활사업 안내」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전세점포 임대지원 및 사업자금 대여한도를 현실 여건에 맞게 상향하고, 상환기간 역시 지침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안정적 운영과 실질적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1) 사업자금 대여

- (지원한도) 자활기업당 2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1억원
-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사업장(점포 등) 지원

- (지원한도) 1천만원 ~ 3억원
- (지원기간) 5년 이하 단위 계약(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기존 7천만원 이던 대여금액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상환방식을 '5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개정함.
- 안 제9조의2(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는 임대 지원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기존 '1~2년 단위, 최장 6년'에서 '5년 이하 단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사업의 지원한도가 물가상승 및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자활사업 안내」 기준을 반영하여 전세 점포 임대 지원금과 사업자금 대여 한도를 상향하고, 상환기간을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5(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제26조의7(기금의 지도·감독)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 및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